

- (③④) 어업인 소득안정, 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감면 연장하되,
 -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등록면허세 감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 종료
 - (⑤) 농어민을 위한 지속 지원을 위해 농·수협 등의 담보물 등기에 대한 감면 연장
 - (⑥) 농어촌공사가 농어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하되,
 - 담세력,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취득세 감면율 축소하고 및 감면 실적이 미미하거나 농업과 관련이 낮은 사업은 종료※ 농지매매사업용(1호) 농지시장안정사업용(5호) 농지 : 감면율 축소(취 50% → 취 30%) 조성토지 처분특례(1-3호), 생활환경정비 사업(4호), 농지 재개발 사업(4-2호) : 종료
 - (⑦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안정 등에 기여하는 점 고려 감면 연장
 - (⑧)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 등 공익성 고려, 감면 연장하되,
 - 타 감면과의 형평성 및 최소납부세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최소납부 세제 적용 유예 종료*
- * 부칙(법률 제15295호, 2017.12.26.) 제7조